

[사 건 명] 행심 2018 - 23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중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 등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8. 4.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서면사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4. 23.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8. 5.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전문가인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학교장조차도 이 사건 대해 심각성을 외면한 채 가해학생들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린 만큼 절차위법이 있다.
- 나. 청구인은 피해자이고 학교폭력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청구인을 학교폭력을 하였다는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그로 인한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통보서상의 조치원인에 학교폭력 쟁점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집단 피해를 입은 청구인이 가해자와 동등하게 했다고 기재하여 청구인은 2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가해자들로부터 수개월동안 집단폭력을 당하였고, 청구인이 수치심과 모욕 속에서 힘든 학교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처분은 청구인의 상처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자치위원으로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고, 비록 변호사가 불참하였지만, 총 9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중 과반수가 참석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위법이 없다.
- 나.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학생의 처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고, 학교장은 관련 학생들을 개별, 그룹 면담하도록 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선도적 지도를 한 만큼 절차의 위법이 없다.

다. 상대학생 9명의 학생들은 갈등의 원인이 청구인에게도 있고, 자신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선도가능성이 보여 교육적 차원에서 본 처분을 내린 것이고, 청구인도 상대방 학생들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방사안으로 다루게 되었고, 청구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사과 조치를 내린 것이다. 상대방 학생들과 청구인에게 가해부분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청구인에게는 가장 낮은 서면사과를, 상대방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 조치를 내려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결과서의 조치원인 기재부분은 청구인이 3학년때 조치원인에 해당하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처분 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 ㉸㉸㉸, ㉸㉸㉸, ㉸㉸㉸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 등은 청구인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각 받았다.

나. 청구인은 3학년이 된 후 ㉸㉸㉸과 같이 우연히 버스에 동승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에게 ‘혼자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네’ 라고 말을 하였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절차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전문가인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학교장조차도 이 사건 대해 심각성을 외면한 채 가해학생들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린 만큼 절차위법의 있다고 주장하나,

변호사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만큼,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하였는지 여부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2) 청구인이 버스 안에서 ㉸㉸㉸에게 모욕을 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버스를 우연히 ㉸㉸㉸과 동승하게 된 사실과 ㉸㉸㉸에게 “혼자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네”라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나아가 “나 재량 더러워서 같이 안 내릴래” “아 더러워”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은 청구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 대한 가해자이었던 ㉸㉸㉸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에게 그런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혼자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네” 말을 하였다는 것이 ㉸㉸㉸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 등에게 학교폭력을 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에게 뒷담화나 조롱, ▶▶▶에게 저격글, ○○○에게 뒷담화, ◆◆◆에게 조롱, ■■■에게 뒷담화 등의 학교폭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 등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뒷담화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뒷담화의 내용이 없고, 저격글이라는 부분도 글만으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나머지 학교폭력 여부에 대하여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 의심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먼저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 등은 청구인에 대한 가해자의 지위에 있으

며, 또한 ㉸㉸㉸ 등의 진술들을 뒷받침을 할 만한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위 ㉸㉸㉸ 등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 등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앞에서 버스 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인이 ㉸㉸㉸ 등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